1. 상주농협 영농지원센터 구매사업 안내

○ 비료(일반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등), 농약 및 4종복비, 사료, 면세유

○ 농기계은행사업, 농용자재(비닐, 포장용 박스, 농약살포기 노즐 등)

○ 종자(배추, 무, 상추, 고추, 양파, 참깨, 대파, 당근, 옥수수, 시금치 등)

2. 상주농협 영농지원센터 밴드(BAND)운영

○ 영농지원센터(경제사업소, 농산물공판장) 업무와 관련한 공지내용, 농업소식 영농기술자료, 병해충방제처방, 농산물출하, 지역소식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활용한 밴드를 통해 이용 농업인이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**“상주농협영농지원센터” 밴드 운영(https://band.us/@sangnong1)**

○ **밴드 검색창에서 “상주농협” 또는 “상주농협영농지원센터” 검색**하여 가입

- 검색창에 “상주농협”을 입력하시면 “상주농협하나로마트 밴드”도 함께 검색이 되니 가입하셔도 상품할인 등 생활용품 및 식자재 장보기 정보를 함께 공유 받으시길 바랍니다.

3. 병해충방제를 위한 농약 처방 및 비료 사용 등 영농상담

(1) 감, 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, 고추, 벼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처방 및 상담

(2) 올바른 비료 사용방법 등 영농 상담 및 각종 비료 판매

4.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안내

각종 혜택이 많은데 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) 구입 시 아직도 상주농협 농기계은행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?

농업생산비 절감과 농업인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은행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니 대형농기계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상담 바랍니다.

(1) 대상농기계 :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

(2) 신청 기간 : 1월 ~ 9월

(3) 농기계은행 참여를 통해 구입한 농업인(책임운영자)가 받는 농가혜택은?

① 초기 구입비용과 이자부담이 전혀 없어 가장 저렴하게 농기계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(시중가격 대비 약 10~30% 할인효과)
② 농협과 연계된 공급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③ 다른 사람의 농작업대행 시 임작업료 수취로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.
④ 농기계종합보험과 오일류 지원(지원범위는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차등지원)

5.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내

(1) 신청자격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

○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

○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

(2) 지원 대상 유기질비료

○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비료, 유기복합비료

○ 부숙 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 퇴비, 퇴비

(3) 신청 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매년 11월~12월)

○ 유기질비료 신청 시 '**대금결재 희망농협**'을 '**상주농협**'으로 신청

(4) 공급시기 : 1월 하순부터~년중 공급 희망시기(상주시청 보조확정 통보 후)

6. 면세유 관련 신고 안내

(1) 보유내역 일제신고: 홀수년도(2021, 2023, 2025년) 11월

-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 농업인 전체 신고

(2) 대형농기계 일제신고: 매년 11월

-대상농기계: 화물자동차, 농업용 트랙터, 고속분무기(SS기), 콤바인, 농업용 난방기, 농업용 로더(2톤 이상~4톤 미만)

(3) 시간계측기 사용시간 신고: 매년 1월, 7월

-대상농기계: 트랙터, 콤바인, 난방기, 버섯재배소독기, 곡물·농산물건조기

(4) 생산실적 신고: 매년 1월, 7월 전년도 면세유 1만 리터 이상 사용 농업인

(5) 재배계획 신고: 매년 11월, 전년도 면세유 1만 리터 이상 사용 농업인

(6) 주의사항: 신고기간 내 신고서 미 제출시 1년 또는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중단되오니 대상농업인께서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.

(7) **농기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 시 반드시 관리농협에 신고**

- 농기계 등의 취득·양도 또는 농업인이 사망·이농 등으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**30일 이내에 신고**하여야 하며,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오니 관련 사항을 반드시 참조바랍니다.

7. 면세유 부정유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(1) 면세유카드 주유소 보관행위 및 선결재(승인) 완료된 면세유 주유소 보관행위

(2) 면세유를 미리 공급받고(외상) 추후 결재하는 행위

(3) 면세유를 승용차, 가정 난방용 등 용도외 사용 및 타인에게 양도행위

(4) 면세유를 배정된 유종과 다르게 주유소에서 유종 변경하여 구입하는 행위

(5) 면세유 부정유통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 및 조세처벌법 제4조에 의거 처벌 받으며, 감면세액 및 세액의 40%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

8. 농용자재(비료, 농약, 사료 등) 구입과 농업경영체등록 등록

① 농업경영체는 농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을 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민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입니다.

② 농업경영체등록 자격

▶1,000㎡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

▶330㎡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시설을 설치 후, 소 2마리 이상, 닭 1,000수 이상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

▶양봉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꿀벌은 10군 이상 등

③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의 혜택

▶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자격 및 농업직불금 혜택

▶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 추가 취득시 일부 감면혜택 등
▶농업관련 보험(농업인안전보험, 농기계보험 등) 가입시 보조지원
▶농업용 퇴비, 면세유, 농자재 구입시 지원혜택
-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면세유 공급 불가
▶비료, 농약, 퇴비, 사료 등 영세율 농자재는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구입불가
-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농약, 비료 등 구입시 농업인의 자격을 인정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세금 없는 농자재 공급
▶과세 농용자재 중 비닐, 과일포장용 박스, 하우스파이프 등을 구입한 내역에 대해 환급대상 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

④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
▶본인 명의로 영세율농자재를 구입할 수 없기에 농협에서 지원하는 **농약, 일반자재**의 장려금 혜택(5%)을 볼 수 없음
▶농업이용금액에 대한 **이용고배당**에 불이익 발생
▶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으신 일부 조합원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**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**에 신청하여 등록을 받아 각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